

보상위원회 운영규정



주식회사 풀무원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- ①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의2, 이사회규정 제12조에 의거, 이사회 내 위원회인 보상위원회(이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회사는 등기임원들을 공평하고 경쟁력 있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.

제2조 (역할 및 권한)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과 역할에 따라, 회사의 등기임원의 보수 및 보상, 퇴직금에 관한 사항의 부의 사항 검토 및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'위원장'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 유고 시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.
 - 1. 사외이사 중 가장 먼저 위원회에 선임된 이사
 - 2. 제1호에 해당하는 이사가 복수일 경우 연장자

제 3 장 회 의

제5조 (소집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. 그러나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7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의 2 (외부 자문 등)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보상에 관한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부 전문가와의 계약 체결, 변경 및 해지 등은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.

제8조 (이사회와의 관계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며,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.

제9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 의 위임에 따라 아래 사항을 결의한다.

1. 등기임원의 개별보수액 결의 (단, 사외이사 개별보수액은 경영위원회에서 결의)

가. 성과목표를 포함한 보상정책과 체계의 설계·운영 및 설계·운영의 적정성 평가

나. 보상정책에 따른 평가 및 집행 결과

2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

2. 미등기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(단, 퇴직금 지급기준은 등기/미등기 임원 동일하므로 포함하여 보고)

3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

4. 스탁그랜트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11조 (위원회 지원조직)

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인사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는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사회 사무국은 간사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위원회 사무 전반을 지원한다.

제12조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(1)

이 규정은 200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)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3)

이 규정은 2023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4)

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9조 제1항 제1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